낙하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맞음

재 해 개 요

'15. 6월 경남 양산시 소재 식료품 캔 생산 공장 내에서 작업자 3명이 고장으로 정지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수리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낙하하며 다른 직원이 낙하하는 운반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일반작업용리프트)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는 리프트의 운반구가 양정된 상태에서 수리 도중 리프트가 낙하하며 발생함 ※기인물(일반작업용리프트)

- 재원 : GOOO INDUSTRY(미국)

- 제작년도 : 1990년

- 적재하중 : 약 453.6kg

- 작동방식 : 모터 및 체인식

- 피재자는 평소 생산관리 업무를 하나, 재해 당시에는 생산라인이 멈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리프트에 접근하였으며, 양정된 리프트 내부에 얼굴을 내밀어 보던 중 리프트가 낙하함
- 리프트 수리는 설비 오퍼레이터 3명이 실시하였으며, 양정되어 멈춰있는 상태의 운반구를 하강시키고자 디스크브레이크 고정볼트(3개)를 해체하면서 운반구가 급강하함

※운반구가 자유낙하 시 지면까지 도달 시간 : 약 0.56초

재해발생 원인

- 리프트 수리작업 시 양정된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었으나,
-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으며,
-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리프트의 수리 작업시에는
-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
-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

관련 법규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(조립 등의 작업)

-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·조립·수리·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
- 2.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2. 유압,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·기구의 덤프, 램(ram), 리프트, 포크 (fork)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